광주직할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목 "(청문)" 을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1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7호의 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 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 태 료 부 과 기 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부과 기준

적 용 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폐 기 물 관 리 법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법 제7조)			
	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25	25	25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 1Kg 미만	50	50	50
	2) 1Kg 이상 10Kg 미만	75	75	75
	3) 10Kg 이상	100	100	10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적 용 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10Kg 미만	100	100	100
	2) 10Kg 이상 20Kg 미만	150	150	150
	3) 20Kg 이상	200	200	200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 50Kg 미만	200	200	200
	2) 50Kg 이상 1톤 미만	350	350	350
	3) 1톤 이상	500	500	500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등)을 버리는 행위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다량 배출자및 동법 제17조 제1항의 일반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			
	1) 2톤 미만	500	500	500
	2) 2톤 이상 5톤 미만	750	750	750
	3) 5톤 이상	1,000	1,000	1,000
	2.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제15조 제2항)			
	가.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자의 경우	300	600	1,000
	나. 다량배출자 이외의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법제16조 제2항)	10	30	50

적 용 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3.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법제16조 제2항)			
	가.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의 경우	300	600	1,000
	나. 다량배출자 이외의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법제16조 제2항)	20	50	100

【별지 제7호의 2서식】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및 납부통지서

발 행 번 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 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 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 반 사 실	일 시	내 용			
위 반 법 률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 표의 뒷면부분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168mm×118mm
(인쇄용지[특급]34g/m²)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및 납부통지서

발 행 번 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 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 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 반 사 실	일 시	내 용			
위 반 법 률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광주직할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 하니 지정된 기간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청장 인

○ 표중 발행번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별)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 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수납날짜도장

인

○ 표중 발행번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정)

(개인통지용)

과 태 료 영 수 증

발행 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수납날짜도장		취급자인
	인	

○ 표중 발행번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무) (구청 봉보용)

과태료 납부영수필 통지서

발행 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수납날짜도장

광주직할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부의무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반 사항				
⑥ 과태료금액			⑦ 당 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광 주 직 할 시 서 구 청 장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 20조(청문)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규칙 제82조의 청문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현행과 같음) ②------ ----------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1조(과태료처분통지등) ①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② ~ ③ (생략)	제21조(과태료처분통지등) ①---------- ---------- ---------- ---------- ---------- ----------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7호의 2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 나. (생략) 다.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 (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삭제)